

『인도네시아, LPG용 강제 실린더(Steel Cylinders)에 대한 국가 표준의 의무적 준수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개정』 심층분석 보고서

2025. 03.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7311
통보국	인도네시아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2,745 (2024)
작성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목 차]

1. 규제 개요	1
2. 개정 세부내용	3
3. 관련 법령 및 표준	10
불임. 규제 참고자료	10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LPG용 강제 실린더(Steel Cylinders)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1452:2011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기술 규정을 개정하여 2024년 11월 13일 채택하고, 2025년 2월 25일 통보하였음

※ IND/19('08.02.05 통보)는 LPG용 강제 실린더를 포함한 5개 제품 품목에 대한 인도네시아 표준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후 발행된 추가 통보(Addendum) 문서는 5개 제품 품목 중 일부에 대한 추가 내용이나 수정 사항을 전달함. 본 개정 규정은 IND/19에 대한 Addendum으로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SNI 표준의 강제적 준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IDN/19/Add.2에서 IDN/19/Add.12까지의 Addendum은 본 규제의 적용 대상 범위와 다른 품목을 규제함

□ (규제요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조되거나 현지로 수입되는 LPG용 강제 실린더 제품이 SNI 1452:2011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SNI 인증서 발급, 생산 공정 심사 및 제품 품질 시험을 포함하는 Type 5 인증 시스템을 적용한 적합성 평가 절차 및 품질 보증의 책임 등을 규정

TBT 통보번호	▪ IDN/19/Add.13	통보일	▪ 2025-02-25
		고시일	▪ 2024-11-20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가지 산업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시행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92/M-IND/PER/11/2007호 ▪ Decree of Minister of Industry No. 92/M-IND/PER/11/2007 on Mandatory Implementation of Indonesia National Standard for 5 industry products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산업부 ▪ Minister of Industry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 평가, 인증 		
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최종안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1월 13일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5월 20일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5월 20일까지(개정안 시행 전 생산된 제품을 사용이 부적합하다가 선언되기 전까지 유통할 수 있음)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PG용 탱크강(HS: 7311.00.91.00; 7311.00.99.00)▪ Tank Steel for LPG (HS:7311.00.91.00; 7311.00.99.00)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PG용 강제 실린더<ul style="list-style-type: none">- 1.5kg에서 50kg 크기의 가압 실린더로, LPG용 강판, 판재, 열간 압연 코일로 만들었으며, 밸브와 고무 씰이 장착되어 있음		
對 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 2,745	HS Code	▪ 7311

2

개정 세부내용

□ 개정 대상 규정 및 조문 구조

- 2024년 산업부 장관령 66호(이하, 개정 규정)
 - 본 개정 규정은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국가 표준의 의무적 준수를 규정하는 기존(현행) 산업부 장관령 <47/M-IND/PER/3/2012>를 개정하여 대체함
 -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국가 표준) SNI 1452:2011
- 개정 규정의 조문 구조
 - 본 규정의 조문은 8개 장 65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에 관한 Scheme 문서를 포함하고 있음

[표 1] 개정안 목차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적용 범위

제3장 적합성 평가

제1절 일반 요구사항

제2절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서 취득 절차

제3절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라벨링 사용 승인

제4절 사후 관리 규정

제4장 책임에 대한 규정

제5장 인증 취득 및 발급 절차

제6장 기타 규정

제7장 과도기적 규정

제8장 종결 규정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 스키마 문서 - LPG용 강제 실린더

□ 적용 대상 범위(규제원문 2조 및 3조)

- LPG용 강제 실린더의 HS code 및 규제 적용 예외 요건
 - 적용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예외 요건을 추가

[표 2] 범위 - 규제원문 RSS-102.SAR.SIM 1항

	기존(현행) 규정 (47/M-IND/PER/3/2012)	개정 규정 (2024년 산업부 장관령 66호)
2조	2조 (1)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의무 SNI 표준 및 관세 분류 번호(HS 코드)는 다음과 같다.	2조 (1)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해 SNI 1452:2011 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기존(현행) 규정 (47/M-IND/PER/3/2012)	개정 규정 (2024년 산업부 장관령 66호)
	<p>제품: LPG용 강제 실린더 SNI: SNI 1452:2011 HS Co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7311.00.91(의 일부 품목) b. 7311.00.9D c. 7311.00.94(의 일부 품목) <p>[생략]</p>	<p>(2) 제(1)에 따른 LPG용 강제 실린더는 다음의 관세 분류 번호(HS 코드)를 가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7311.00.91(의 일부 품목) b. 7311.00.92 c. 7311.00.94(의 일부 품목) <p>(3) 제(2)에 따른 LPG용 강제 실린더는 국내 생산품 및/또는 수입품으로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이다</p>
3조		<p>제3조</p> <p>(1) 제2조에 따라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국가표준(SNI)의 의무 적용은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술적인 특성상 동일한 유형의 제품이지만, 적용되는 표준(SNI)과는 범위, 분류, 및/또는 품질 요건이 다른 자체 표준을 가진 경우 b. SNI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한 시험 용 샘플 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p>(2) 제(1) b호에 해당하는 시험용 LPG 강제 실린더는 판매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p>

※ 7311.00 뒤의 두 자리 코드(91, 92, 94)는 인도네시아의 세부 분류 번호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관세청의 품목분류포털의 코드와 다름. 본 보고서는 국내 코드 체계를 참조하여 7311.00 으로 작성함

□ LPG 용기 밸브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규제원문 3장 1절)

○ 적합성평가 방법(규제원문 6조)

- 다음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Type 5 인증 시스템을 적용함

- ① ISO 9001:2015에 따른 품질 관리 시스템의 적용 및 생산 공정 감사
- ② SNI 1452:2011에 따른 품질 적합성 시험

○ (생산 공정 감사 기관) 제품 인증 기관(이하, LSPro*)

* 산업용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품 인증을 수행하고,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SNI 요건에 따라 SNI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 기관으로, 국가 인증 위원회(이하 KAN)에서 인정하고, 주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 품질 적합성 시험의 방법 및 요건(규제원문 7조)

- 품질 적합성 시험은 인도네시아 현지 시험소(이하, 국내 시험소) 또는 해외 시험소에서 수행함

- ① (국내 시험소의 요건) KAN에서 인정하고, 주무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 ② 해외 시험소의 요건

- 국제 인증 협력을 통해 상호 인증 협정 서명 기관에 의해 적절한 범위로 인증을 받은 기관이며
- 해당 시험소가 위치한 국가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와 기술 규제 분야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고
- 장관에 의해 지정된 기관

○ SNI 인증서의 발급 요건(규제원문 9조)

- 주무 기관은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후 SNI 인증서를 발급하며, 그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발급 대상)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생산자** (이하, SNI 인증서 발급 대상자)

* 인도네시아에 위치하며 LPG용 강제 실린더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법적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하며 LPG용 강제 실린더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 ① 위탁생산*의 경우, 이를 제공받는 산업 기업이나 해외 생산자에게 발급

* 산업 기업이 아닌 사업자 또는 해외 제조업체가 아닌 외국 사업자가 협력 제공자이자 상표 소유자로서,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체인 협력 수령자와 체결한 협력 형태로, 협력 제공자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LPG용 강제 실린더를 생산하는 협력 방식

- ② (인증서의 보유 및 기재) 상기 발급 대상자는 생산 장소당 1개의 SNI 인증서만 보유할 수 있으며, 1개의 브랜드만 기재할 수 있음

-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 SNI 인증서 발급 대상자의 요건(규제원문 10조 및 11조 (1))

- 규제원문 10조와 11조 (1)항은 산업 기업과 해외 생산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SNI 인증서 발급 대상자는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생산 시설과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세부 요구사항은 규제원문 해당항목을 참조)

- 해외 생산자의 SNI 인증서 발급을 대리하는 공식 대리인의 요건(규제원문 11조 (2)~(6))
 - 규제원문 11조 (2)항 ~ (6)항은 공식 대리인의 요건을 규정함
 - 해외 생산자가 SNI 유효기간 만료 전 공식 대리인을 교체하면, 해당 인증서는 효력을 상실함

□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SNI 인증 발급 신청 (규제원문 3장 2절)

○ SNI 인증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처리 관련 주요 내용

- 규제원문 3장의 2절은 SNI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문서 목록, 그리고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주무 기관의 업무와 권한 등을 규정 (※세부 요구사항은 규제원문 해당항목을 참조)
- SNI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규제원문 부속서에 작성된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SNI 인증 Scheme을 따름

□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SNI 인증 라벨링 관련 요구사항 (규제원문 3장 3절)

○ 라벨링 종류 및 부착 방법

- 라벨링은 (i)SNI 라벨링과 (ii)전자 라벨링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무 기관의 라벨링 사용 승인이 필요
- 위에서 언급한 SNI 라벨링 사용 승인에 대한 증명을 위해 SNI 라벨링 사용 승인서(이하, SPPT SNI)가 필요함
- 라벨링의 구체적인 부착 방법은 다음 표를 참조

[표 3] 라벨링의 구체적인 부착 방법 (규제원문 부속서 E)

부속서 E. SNI 라벨링과 전자 라벨링 부착

1. SNI 라벨링과 전자 라벨링은 SNI 1452:2011 요건을 충족하는 LPG용 강제 실린더 제품의 적합성 증명으로 사용된다.
2. SNI 라벨링과 전자 라벨링 부착은 SPPT SNI를 통해 기관장으로부터 SNI 라벨링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수행된다.
3. SNI 마크 부착은 모든 LPG용 강제 실린더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며, 쉽게 지워지지 않고,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4. SNI 마크는 손잡이 보호대(hand guard)에 스탬핑 방식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5. 전자 마크는 초기 도장된 LPG용 강제 실린더(초도 생산품, 즉 유지보수 제품이 아님)에 한하여, 실크스크린 방식 또는 페인트로 부착되어야 한다
6. SNI 마크와 전자 마크 외에도, 각 LPG용 강제 실린더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브랜드 또는 로고

b. 제작 일련번호
c. 공중량(빈 용기의 무게)
d. LPG 순중량
e. 수용 가능한 물 용량
f. 제조 연월
g. 시험 압력
7. 위탁 생산의 경우, 표시는 SNI 인증서를 보유한 위탁자의 브랜드에 따라야 한다

○ SPPT SNI의 발급 관련 요건

- (유효 기간) 1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매년 갱신할 수 있음
- 규제원문 28조 ~ 37조는 SPPT SNI 발급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문서 목록, 그리고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주무 기관의 업무와 권한 등을 규정 (※세부 요구사항은 규제원문 해당항목을 참조)
- SPPT SNI를 발급하는 절차는 규제원문 부속서에 작성된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SNI 인증 Scheme을 따름

□ LPG-용 강제 실린더의 SNI 인증 후 사후 관리 요구사항 (규제원문 3장 4절)

○ 사후 관리(Surveillance) 관련 요건

- SNI 인증서를 발급한 LSPro가 정기적으로(1년에 한번) 또는 불시에(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또는 주무 기관 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함
- 규제원문 38조 ~ 44조는 LSPro의 사후 관리 수행 방법과 준수 및 제재 요건 등을 명시함 (※세부 요구사항은 규제원문 해당항목을 참조)
- 사후 관리 절차는 규제원문 부속서에 작성된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SNI 인증 Scheme을 따름

□ 품질 보증 책임 요구사항(규제원문 4장)

- LPG-용 강제 실린더의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규제원문 45조)
 - 자체 브랜드로 LPG-용 강제 실린더를 생산 및 유통하는 자와 공식 대리인이 해외 제조업체의 상표를 사용하여 LPG-용 강제 실린더를 유통하는 경우 LPG-용 강제 실린더의 품질 보증 책임이 있음
- 위탁생산 방식에서의 품질 보증 책임(규제원문 46조)
 - ① 산업 기업이 LPG-용 강제 실린더를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 위탁생산을 제공받은 산업 기업
- ② 해외 제조업체가 생산한 LPG용 강제 실린더가 공식 대리인의 창고 및/또는 관리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 위탁생산을 제공받은 해외 생산자를 대표하는 공식 대리인
- ③ 상기 장소를 벗어난 LPG용 강제 실린더는 다음 중 하나의 대상에게 품질 보증 책임이 있음
- 위탁생산을 제공한 국내 사업자 또는 위탁생산을 제공한 해외 사업자의 현지 대표

□ 인증서 발급 절차(규제원문 5장)

- 인증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처리 관련 주요 내용
 - 규제원문 5장은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와 방법,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문서 목록, 그리고 적합성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주무 기관의 업무와 권한 등을 규정 (※세부 요구사항은 규제원문 해당 항목을 참조)
 -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규제원문 부속서에 작성된 LPG용 강제 실린더에 대한 SNI 인증 Scheme을 따름

□ 기타 요구사항(규제원문 6장)

- 해외 생산자가 제조한 LPG용 강제 실린더의 입고(규제원문 56조)
 - 유통 또는 소유권 이전 전 공식 대리인이 보유한 창고로 입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을 명시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SNI 인증서 또는 SPPT SNI를 보유한 LPG용 강제 실린더의 유통 요건(규제원문 57조)
 - 국내 생산의 경우, SNI 인증서와 SPPT SNI의 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
 - 수입 제품의 경우, SNI 인증서와 SPPT SNI의 유효기간 내에 세관 의무를 완료한 제품
 - 제품의 품질이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생산 공정 감사 및 품질 적합성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규제원문 60조)
 -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생산자의 공식 대리인을 통해 산업 기업이나 해외 생산자에게 청구함

□ 개정안의 과도기적 규정 (규제원문 7장)

- 기존 규정에 따라 발급된 SNI 라벨링 사용 제품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 해당 인증서는 본 개정 규정에 따른 SNI 인증서 및 SPPT SNI로 간주하며, 2026년 5월 20일까지 본 개정 규정의 요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함
- 기존 규정에 따라 SNI 라벨링을 부착한 LPG용 강제 실린더의 전자 라벨링
 - 전자 라벨링 부착 의무에서 제외되며, 다음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선언되기 전까지 유통할 수 있음
 - 2025년 5월 20일 이전에 생산된 국내 생산 제품
 - 2025년 5월 50일 이전에 세관 의무를 완료한 수입 제품

3

관련 법령 및 표준

□ 관련 표준

- 본 개정안의 규제 대상 제품의 적합성 평가는 다음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을 참조함
 - SNI 1452:2011 (LPG용 강제 실린더)

불임

규제 참고자료

□ 규제원문 출처

- 개정 규정의 원문 출처
 - 또는 WTO TBT 질의처: [URL](#)